

신문보도와 그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LEWIS v. DAILY TELEGRAPH LTD.

[1963] H.L. 234

판시사항

아래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은 신문기사 내용을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뜻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지식이 없는 보통사람으로서는, 그 기사를 보고 원고가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단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고(신문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개요

Daily Telegraph 사는 「Daily Telegraph」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Associated Newspapers 사는 「Daily Mail」이라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1958년 12월 23일 양 신문사는 위 각 신문의 제 1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1) Daily Telegraph 지의 기사

「시경찰, 회사를 조사. Daily Telegraph 기자 양. 런던시의 사기단속반 관리들이 Rubber Improvement사와 그 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위 조사는 최근에 개최된 위 회사의 회의에서 한 주주가 위 회사 사장의 발표와 회계에 관하여 비판한 후에 요청되었다. 수권자본금이 100만 파운드인 위 회사의 사장은 Bolton 출신의 전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인 John Lewis 씨이다.」

2) Daily Mail 지의 기사

「사기단속동반, 회사를 조사하다. Francis Lea 총경 지휘하의 시사기단속동반은 Rubber Improvement 사의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자본금 400 만 파운드인 위 회사의 사장은 전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인 John Lewis 씨이다. 위 회사는 주로 국영석탄공사에 납품하는, 유연성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생산하고 있다.」

위 두 신문의 보도들이 그 보도에 이르는 과정이나 주변사정은 다소 다르지만 그 일반적인 효과는 동일한 것이었다.

재판경과

위 신문보도가 있는 당일, Rubber Improvement사와 그 사장인 John Lewis는 두 신문사 모두를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Daily Telegraph사를 상대로 한 위 두 개의 소송(Rubber Improvement사와 J. Lewis의)이 병합심리 되었고, Associated Newspapers사를 상대로 한, 두 개의 소송이 역시 병합심리되었다.

원고들은 위 소상에서 위 신문보도와 같은 조사가 행하여진 사실을 부인하고, 그와 같은 신문보도의 내용이, 그 통상적이고도 자연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아, 명예를 훼손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소상 제 4 항에서, 원고는, 위 기사의 내용들이 마치 원고가 사기나 부정의 죄를 저질렀거나 경찰에 의하여 그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R. S. C., Ord. 19r. 6(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Particulars. Ord. 19r. 6(2)는, 어떤 기사가 통상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명예훼손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는 외부사안(extrinsic facts)에 의하여 위 제 4 항에서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주장 중에 들어있는 문장들에서 그 뜻이 추단되었다. 특별손해에 관한 주장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위 신문보도의 내용이 그 통상적인 의미에서 보아 명예훼손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보도에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1958년 12월 23일 경찰이 J. Lewis가 사장으로서 있는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피고들은 위 신문보도의 문언들이 원고를 사기범이라거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거나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였다.

Salmon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이루어진 재판과정을 통하여, 경찰이 1958년 12월 23일 한 주주의 제보로, 원고가 사장으로 있는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행한 사실은 입증되었다. 위 신문보도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위 배심원들에게 현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당한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 의하여 암시되었다.

증거에 대한 결론에서 판사는, 배심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들의 주장사실, 즉 진의설명조항(innuendo, 명예훼손에 기한 소추 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기소장 또는 소장 중에 피고인 또는 피고가 현재 사용 또는 전달한 표현을 기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 부분과는 별도로 또는 그 부분에 부가하여, 그 표현이 외관상은 특정한 또는 원고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은 특정한 또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또는 그 표현이 일견 명예를 해하는 것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실은 은어적이라는 것 등의 이유로, 명예를 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그러한 진의를 설명하는 부분을 innuendo 라고 부른다)의 의미에 관하여는, 그 부분이 어떠한 외부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그 해석을 배심원들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며, 오직 통상적인 의미(이 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를 명예훼손적이라고 인정하기는 하나, 한편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한 해석만이 배심원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배척하였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위 신문보도기사가 innuendo 에서 주장된 바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배심원들이 그 사실의 존재여부를 발견해도 좋다고 판시하였다. 판사는 금전적인 손해에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배심원들에게 2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임하였다. 즉 (1)배심원들이 원고승소냐 또는 원고패소냐를 결정하고 (2)만일 원고승소라면, 얼마의 액수를 배상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원고들의 피고 Daily Telegraph 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J. Lewis 에게 25,000 파운드, Rubber Improvement 회사에게 75,000 파운드를, 각 배상하도록 평결하였고, 이어 그 이틀 후에는 다른 배심원들이 원고들의 피고 Associated Newspapers 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J. Lewis 에게 17,000 파운드를, 그 소속의 위 회사에게 금 100,000 파운드를, 각 배상하도록 평결하였다.

위 각 재판에 대하여 피고들인 Daily Telegraph 사와 Associated Newspapers 사에 의해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인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심리한 결과, 동 법원은 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새로운 재판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번에는 원고들인 Rubber Improvement 사와 J. Lewis 가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법원에 위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는 Reid 경, Jenkins 경, Morris of Borth-Y-Gest 경, Hodson 경, Devlin 경이 관여하였다.

1.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판사는 그 신문기사(또는 기타 표현)가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이러한 의미가 그 사용된 문언들의 자연적이고도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이 추단되는 것으로 원고에 의하여 주장되면 족한 것이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2. 본건에 있어서는 그 신문기사 내용의 자연적이고도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지식이 없는 보통사람으로서는 그 기사를 가지고 원고가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단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배심원들은 위 신문기사가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지휘되어야 한다.

Morris 경의 견해 innuendo 가 주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그의 주장사실이 그 신문기사의 함축된 의미라는 사실을 반드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Hodson 경의 견해 원고는, 그가 진실한 innuendo 에 의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한, 문제된 신문기사가 그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로서 나타내는 바를 그 청구원인사실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vlin 경의 견해. 어느 신문기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innuendo 에 의하여 확장된 의미는 별도의 소송사유가 되나, 한편 innuendo 에도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명예훼손죄가 되기 위한 자연적이고도 통상적인 의미는 다른 법률을 위하여서도 또한 자연적이고도 통상적인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그가 계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그 암시에다가 통상인에게도 납득될 만한 암시와 innuendo 를 첨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장의 주장은 3 단계가 되어야 한다 즉 (1) 명예훼손적인 기사들을 열거하는 항, (2) 위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그 기사 자체로서는 부족할 경우, 그 기사 자체의 문언을 넘어, 그 기사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innuendo 나 간접적인 의미를 주장하는 항, (3)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R. S. C., Ord. 19r. 6(2)의 규정에 의한 Particular(명세서)에 의하여 그 기사의 제 2 의 의미 또는 법률적인 innuenedo 를 주장하는 항이 그것이다.

3. 이 건 각 소송의 1 심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은 너무 고액이어서 부당하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법 제 12 조(1952)는 각배심원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가 그에 관련된 명예훼손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두 개의 명예훼손행위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심원들은 원고가 동일한 손해로 인하여 2 배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배심원들은 원고의 소득세와 그 부가세 납부의무를 완수케 하기 위하여 그 일부액을 공제하도록 지휘되어야 한다.

4. 따라서 본건 각 소송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명령되어야 한다.